

#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9월 13일 /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9월 1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▪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(2024. 9. 23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박상근 자원순환과장)

### 가. 개정이유

- 포항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,
- 시민 및 주변지역주민에게 유사시설 등의 견학, 주민의견수렴 등 인식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·기능 및 구성 정비(안 제11조~제12조의2)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선진지 견학, 주민 의견수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의2)
- 포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4조의3)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조문 정비

## 다. 관련법령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박명권)

- 본 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·기능 및 구성 정비하고,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선진지 견학, 주민 의견수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#### ○ 종합검토 결과

-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「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「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였고, 본 기금은 2023년말 기준 127,922천원을 조성하여 제철동 633세대, 오천읍 원리 79세대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.
-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, 「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,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음.
-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선진지 견학, 주민의견수렴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비선호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, 안 제14조의3에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주민참여도를 더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,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